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해구호의 기본원칙 신설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5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신설	3
2. 이재민 기준 법률 상향 및 유가족 범위 확대	6
3.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신설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 구호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의 유가족 협상 지연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화성시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중단 결정과 번복 등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의3).

Ⅲ. 검토의견

1. 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신설

개정안은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고,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원칙 규정은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목적규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강조하기 위해 두고 있음¹⁾.

현행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1)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p. 242.~243.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어떠한 차별적 고려 없이 모든 재난피해 대상에게 행해야만 하는 구호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에 취약한 대상을 고려해야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현행 법령²⁾ 및 각종 구호지침³⁾을 통해 구호약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4조(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자에게 병원급 의료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거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구호약자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기본원칙 내용이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기본원칙 규정 신설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이재민 기준 법률 상향 및 유가족 범위 확대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재민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u>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u> 을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가.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3조제1호에 따른 <u>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나. <u>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1) 유실·붕괴 또는 전도(顛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2)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u><신 설></u>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u><신 설></u>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이재민을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이재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⁴⁾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재민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이재민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추가하여 구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기후 및 사회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유형 및 상황이 다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구호 대상이 되는 이재민의 범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이재민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개정안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민법」이 친족과 가족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것⁵⁾과 유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 배

4)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⁶⁾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와의 부합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이재민의 기준은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다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낮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빠르게 해당 여부를 파악하게 할 필요는 있으나 가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유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훈령·고시⁷⁾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7)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유족은 제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 후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중앙부처 의견〉

○ (법무부) 유가족 범위에 대한 “보완 검토”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에 괄호로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바, 본 법 내에서 용어 해석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괄호안의 내용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도 해당하는 내용인지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보완 검토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1959년 12월31일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기재부) “현행법 유지”

- 이재민의 범위를 법률에 정하는 것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 실익이 없으며, 이재민의 범위를 명시적인 제한없이 단순히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구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의견〉

○ (충북도) “현행법 유지”

- 유가족에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것은 구호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 구호자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 유지가 적절

○ (경남도) ” 민법 “ 준용

- 친인척은 민법상 친족* 준용,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을 준용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신설

개정안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등의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②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숙박비·식사비 등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③ 예산의 지원시기를 임시주거시설 사용 사유가 해소된 시점까지로 하면서 지원 종료 시 이재민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조의3(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등의 재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u> <u>1. 숙박비</u> <u>2. 식사비</u> <u>3. 구호물품 구입비</u> <u>4.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u>

현행	개정안
	<u>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u>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제4조의2제1항전단에 따른 이재민등에게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등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재민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은 구호기관⁸⁾이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특정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8)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정안은 ①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② 숙박비, 식사비, 구호물품 구입비,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③ 예산 지원 시기를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면서 이재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후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④ 개정안 시행 당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재민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호 효과를 제고하고 아직 재난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이재민까지 구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과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구호기관)으로부터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을 사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임시주거시설, 급식·식품·의류·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지원, 장사의 지원 등의 지원에 대하여도 규정¹⁰⁾하고 있으며, 구호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0) 「재해구호법」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재해구호법」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구호기간에 관하여도 현행 법령이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하되,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¹²⁾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예산지원의 시기를 정할 실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령의 내용과 중복 규정에 해당하고, ‘지원 필요의 해소’와 ‘지원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호주체이자 구호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이재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구호기관의 구호활동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재정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국가의 지원 확대 관련 관계기관 의견]

〈중앙부처 의견〉

○ (기재부) “현행법 유지”

- 이재민등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숙박비, 식사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 등의 제공은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규정에 해당
- 임시주거시설 및 예산 지원기간의 연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이재민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고, 지원 종료를 위한 이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 재해복구의 불필요한 장기화 초래 우려

〈 구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의견 〉

○ (경남도) ” 현행법 유지 “

- 사망, 실종자 가족의 지원 기간 해소 시점이 불명확하며, 특히 실종의 경우 민법에 실종선고의 요건*으로 볼 때 최대 5년까지 인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 유지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일반실종 5년 ②위난실종 1년

문 의 처

02)6788-5349